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55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4.

발 의 자 : 안호영 · 윤준병 · 박희승
안도걸 · 김우영 · 민병덕
이성윤 · 김한규 · 장종태
정동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최근 전국을 수도권 · 동남권 · 대경권 · 중부권 · 호남권의 5개 권역으로 재편하고, 전북 · 제주 ·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행정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초광역권 중심의 ‘5극 3특 국가균형성장’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초광역권의 요건을 ‘시 · 도 행정구역을 넘어서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’로 규정하고 있어,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가 동일 권역 내에서 초광역권을 형성하기엔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. 이로 인해 특별자치도는 초광역산업 육성, 초광역특별계정 등 정부의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실정임.

한편,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완

화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, 최근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계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특별자치도가 독자적으로 초광역권을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,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전북특별자치도계정과 강원특별자치도계정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7호 및 제80조의2·제80조의3 신설 등).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 중 “발전에 필요한”을 “발전을 위하여”로, “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「지방자치법」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·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”를 “추진이 필요한 권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역을 말한다”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가.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·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
- 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·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
- 다.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자치도가 독자적 발전 전략 수립 또는 인접지역과의 연계·협력을 위하여 설정한 권역

제76조 중 “제주특별자치도계정”을 “제주특별자치도계정, 강원특별자치도계정, 전북특별자치도계정”으로 한다.

제78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“제주특별자치도계정”을 각각 “제주특별자치도계정, 강원특별자치도계정, 전북특별자치도계정”으로 한다.

제7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5호 중 “제주특별자치도계정”을 각각 “제주특별자치도계정, 강원특별자치도계정, 전북특별자치도계정”으로 한다.

제8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“지역지원계정”을 각각 “지역지원계정, 강원특별자치도계정, 전북특별자치도계정”으로 한다.

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0조의2(강원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) ① 회계의 강원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
2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, 전북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
3.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
4.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
5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

② 회계의 강원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·보조 또는 융자 등
가. 제78조제2항제1호(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)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

나.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, 제9호, 제10호 및 제16호에
따른 출연·보조·용자 및 지원 등

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
보조사업

2.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

3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, 전북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

4.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

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용자의 대상·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0조의3(전북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) ① 회계의 전북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

2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, 강원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

3.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

4.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

5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

② 회계의 전북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·보조 또는 용자 등

가. 제78조제2항제1호(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) 및 제7호에 따른

보조 및 지원

나.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, 제9호, 제10호 및 제16호에

따른 출연·보조·융자 및 지원 등

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

보조사업

2.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

3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, 강원특

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

4.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

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·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지역지원계정”을 각각 “지역지원계정, 강원특별자치도계정, 전북특별자치도계정”으로 한다.

제90조제4항 중 “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”을 “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,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, 제80조의3제2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6. (생략) 7. “초광역권”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<u>발전에 필요한 연계·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「지방자치법」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·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.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----- -----<u>발전을 위하여</u> -----<u>추진이 필요한 권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역을 말한다.</u> <u>가.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·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</u> <u>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·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</u> <u>다.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</u>

8. ~ 18. (생략) 제76조(계정의 구분) 회계는 지역자율계정, 지역지원계정, <u>제주특별자치도계정</u>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. 제78조(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)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6. (생략) 7. 회계의 지역지원계정, <u>제주특별자치도계정</u>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. ~ 12. (생략)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5. (생략) 6. 회계의 지역지원계정, <u>제주특별자치도계정</u>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7. (생략) ③ (생략) 제79조(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	<u>항제1호에 따른 특별자치도가 독자적 발전 전략 수립 또는 인접지역과의 연계·협력을 위하여 설정한 권역</u> 8. ~ 18. (현행과 같음) 제76조(계정의 구분) ----- -----<u>제주특별자치도계정, 강원특별자치도계정, 전북특별자치도계정</u>-. 제78조(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) ①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-----<u>제주특별자치도계정, 강원특별자치도계정, 전북특별자치도계정</u>----- 8. ~ 12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<u>제주특별자치도계정, 강원특별자치도계정, 전북특별자치도계정</u>----- 7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제79조(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
--	--

세출)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5. (생략) 6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<u>제주특별자치도계정</u>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. ~ 11. (생략)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14. (생략) 15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<u>제주특별자치도계정</u>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16. (생략) ③·④ (생략) 제80조(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) ①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략) 2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<u>지역지원계정</u>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. ~ 5. (생략)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3. (생략)	세출) ①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<u>제주특별자치도계정</u>, <u>강원특별자치도계정</u>, <u>전북특별자치도계정</u>----- 7. ~ 11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14. (현행과 같음) 15. -----<u>제주특별자치도계정</u>, <u>강원특별자치도계정</u>, <u>전북특별자치도계정</u>----- 16. (현행과 같음) ③·④ (현행과 같음) 제80조(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) ①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<u>지역지원계정</u>, <u>강원특별자치도계정</u>, <u>전북특별자치도계정</u>----- 3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
--	---

4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
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
계정으로의 전출금

5. (생략)

③ (생략)

<신설>

4. -----지역지원계
정, 강원특별자치도계정, 전북
특별자치도계정---

5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80조의2(강원특별자치도계정의
세입과 세출) ① 회계의 강원
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
각 호와 같다.

1.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
부터의 전입금

2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
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
정, 전북특별자치도계정 및
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
의 전입금

3.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
입금

4.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
상 잉여금

5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
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

② 회계의 강원특별자치도계정
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
각 목의 출연·보조 또는 용

<신 설>

자 등

가. 제78조제2항제1호(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)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

나.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, 제9호,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·보조·용자 및 지원 등

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

2.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

3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, 전북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

4.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

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용자의 대상·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0조의3(전북특별자치도계정의

세입과 세출) ① 회계의 전북
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
각 호와 같다.

1.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
부터의 전입금

2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
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
정, 강원특별자치도계정 및
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
의 전입금

3.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
입금

4.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
상 잉여금

5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
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

② 회계의 전북특별자치도계정
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
각 목의 출연·보조 또는 용
자 등

가. 제78조제2항제1호(같은
호 바목은 제외한다) 및
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
원

나.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

	<u>7호까지, 제9호,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·보조·용자 및 지원 등</u> <u>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</u> 2. <u>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</u> 3. <u>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, 강원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</u> 4. <u>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</u> <u>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용자의 대상·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제81조(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) ①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략) 2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<u>지역지원계정</u> 및 제주특별자치도	제81조(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) ①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<u>지역지원계정, 강원특별자치도계정, 전북</u>

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. ~ 5. (생략) ②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2. (생략) 3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<u>지역지원계정</u> 및 <u>제주특별자치도</u>계정으로의 전출금 4. (생략) ③ (생략) 제90조(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) ① ~ ③ (생략)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, 제80조제2항에 따른 <u>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</u>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 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끝난 후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.	<u>특별자치도계정</u>----- 3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<u>지역지원계정, 강원특별자치도계정, 전북특별자치도계정</u>-- 4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제90조(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<u>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,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, 제80조의3제2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</u>----- ----- ---
--	---